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6. 3.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한국지능정보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사업(이하 "AI테크포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수립, 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고, 상호출자 및 사업비 정산 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부속지침(이하 "부속지침" 이라 한다) 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란 소관 부처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원을 말한다.
2. "주관 지방자치단체"(약칭 "주관지자체"라 한다)란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지방비 매칭 예산 교부, 전담기관 요청에 따른 정책 지원 등 과제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약칭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AI테크포트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사업수행기관, 참여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주관 사업수행기관"(약칭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5. "참여 사업수행기관"(약칭 "참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부예산으로 교부되는 정부출연금과 주관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수행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용어 정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주관지자체) 주관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교부
2. 전담기관 요청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 정책 등 지원

제3장 과제 조정 및 협약 체결 등

제5조(과제조정위원회)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여부와 내용을 검토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의 경우 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한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수행기간의 적정성
2. 제안한 과제비 세부내역의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3. 제안한 참여인력, 장비도입,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4.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5. 과제의 협약 변경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제6조(협약 체결 방식)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행기관의 장 및 주관지자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주관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 협약 방식
2. 전담기관과 주관지자체,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분리 협약 방식 (이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지자체, 주관기관간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담기관과 주관지자체,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순차 협약 방식. 이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서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및 민간부담금 등) ①AI테크포트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출자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 내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용역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금은 민간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민간부담금 중 인건비 외 현물가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관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